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1. 5. 28

관광건설위원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1년 5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1.5.17)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 가. 제안이유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있어서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에 관한 규정중 건설기계의 작업장소 이동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고, 사용기간 만료일전 건설기계 회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건설기계 작업장소 이동시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 신고토록 함(제12조 제2항)
- 사용기간 만료일 전의 건설기계 회수규정 삭제(제12조 제3항)  
※ 계약서에서 다룰 내용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향하고, 건설기계 회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설기계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공단 등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비로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속한 분양과 입주를 완료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2장 건설기계 사용</b></p> <p>제12조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p> <p>① (생략)</p> <p>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u>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③ <u>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 일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b>제2장 건설기계 사용</b></p> <p>제12조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p> <p>③ &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